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⑪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이 규정에서 “최대주주”라 함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때에는 동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하였을 경우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로 되는 자도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로 보며,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세척이 정하는 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가 투자를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은 최대주주 산정시 소유주식수에서 제외한다.	⑫ -----“최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다만, 최대주주인 본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소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자를 최대주주로 보고,----- ----- 최대주주가----- -----.
⑬ 이 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시행령 제8조의 임원에는 「상법」	⑬ -----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위원을 포함한다.

⑭ ~ ⑳ (생략)

㉑ 이 규정에서 “기술성장기업”이란 세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㉒ ~ ㉗ (생략)

㉘ 이 규정에서 “대형법인”이란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장신청일 현재 기준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국내법인(국내소재 외국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㉙ (생략)

제4조(상장예비심사청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세척에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청

-----, -----임원에는-----
-----.

⑭ ~ ⑳ (현행과 같음)

㉑ 이 규정에서 “기술성장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세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

2. 세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

㉒ ~ ㉗ (현행과 같음)

㉘ -----

----- 법인 -----
-----.

㉙ (현행과 같음)

제4조(상장예비심사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서 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각 부속명세서를 말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외감법 시행령 제4조제9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각 2부. 다만,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를 우선 제출하고 결산 확정 이후에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9항

.

--하며, 제6조 제1항 제6호나목, 제7조 제1항 제2호나목 및 제7조의2 제1항·제3항 제1호다목(4)에 따라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증가율 100분의 20 이상 요건을 적용

가.·나. (생략)

1의2. 외감법 시행령 제4조제9항 제1호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중에 감사인 지정을 받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최근 분기 또는 반기재무제표 및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각 2부. 이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다시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 또는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 2부. 다만, 제1호의2에 따른 반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당해 사업연

받으려는 법인은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1의2. -----

---분기 또는 반기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지정감사인의-----

-----.

2. -----

----- 반기 또는 3분기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지정감
사인의 감사보고서-----

도의 반기 종료 후 4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 6. (생략)

③ ~ ⑤ (생략)

제4조의2(외국기업의 상장예비심사 청구) ① (생략)

②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을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신청전에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와 다음 각호의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생략)

2.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단, 해당기업의 설립지, 회계환경, 해외증권시장 상장경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상장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이하 제6항에서 제4조제4항제4호를 준용함에 있어 같다) 각 2부.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 종료 후 4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외국기업의 상장예비심사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최근 분기 또는 반기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

최근 분기 또는 반기 -----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조제4항, 제5조, 제7조제5항 및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 신규상장신청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제6조(신규상장심사요건) ① 코스닥 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자본상태

최근 사업연도(상장예비심사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상장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로서 상장신청일 현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청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말 현재 자본잠식(당해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한다. 이하 제7조의2에서 같다)이 없을 것.

⑥ -----

-----, 이 경우 제4조 제4항제4호 중 “반기종료”는 “분기 또는 반기 종료”로, “반기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는 “분기 또는 반기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로 본다.

제6조(신규상장심사요건)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자본상태

-----[결산기 변경 등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를 제외하고, 상장예비심사청구일이-----

-----이하 이 조(제19조부터 제19조의4까지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 제7조의2제1항·제2항 및 제19조의3 제1항에서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은 제외(이하 제17조제4항제3호 및 제38조제2항제5호 자목(1)(나)에서 같다)한다.

5. 경영성과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이하 제17조제2항제2호·제4항제2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6. 이익규모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가목·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에서 비지배지분은 제외(이하 제7조제1항제2호 가목·나목 및 제17조제2항제2호 가목·나목에서 같다)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

<삭 제>

6. 경영성과 및 이익규모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나목 또는 다목의 요건은 가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비지배지분은 제외(이하 제7조제1항제2호, 제17조제2항제2호 가목·나목에서 같다)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나.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한하며, 지주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이고 기준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라.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였을 것

<신 설>

에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제7조제1항제2호, 제7조의2, 제17조제2항제2호·제4항제2호 및 제19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같다)이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자기자본이익률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이익액 :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

(3) 매출액과 시가총액 :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한하며, 지주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이고 기준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4) 매출액과 매출액증가율 :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였을 것

나. 기준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

<신 설>

7.·8. (생 략)

9. 감사인의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제4항제4호에서 같다)이 적정일 것

10. ~ 19. (생 략)

② ~ ⑥ (생 략)

제7조(신규상장심사요건의 특례)

① 벤처기업의 신규상장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으로 갈음한다.

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2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증가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다. 기준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공모(매출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 자기자본 대비 기준시가총액 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일 것

7.·8. (현행과 같음)

9. 감사인의 감사의견

포함하며, 제4조제2항1호의2에 따른 분기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제4항제4호에서 같다 ---

10. ~ 19.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신규상장심사요건의 특례)

① -----

-----.

1. (생략)

2. 이익규모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 자본이익률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나.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10억원 이상일 것

다.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기준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라.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20이상 증가하였을 것

1. (현행과 같음)

2. 경영성과 및 이익규모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나목 또는 다목의 요건은 가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 자본이익률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기준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4)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였을 것

나. 기준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2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증가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② 기술성장기업의 신규상장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2. (생략)

③ ~ ⑦ (생략)

⑧ 대형법인의 신규상장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신설>

다. 기준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공모(매출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 자기자본 대비 기준시가총액 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일 것

② -----
-----제6조제1항제1호-----

-----.

1. 2.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략)

⑧ 대형법인의 신규상장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제1항제6호가목 본문 중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형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추가로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19호가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내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일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이 200억원 이상일 것

⑨·⑩ (생략)

제7조의2(외국기업의 신규상장 심사
요건) ① 외국주권 또는 외국주
식예탁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제6
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
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항제16호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1항제3호·제17
호·제18호·제19호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요건으로 갈음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제6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제9호의 요건은 다음 각 목의 요
건으로 갈음한다.

가. (생략)

나. 경영성과

최근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⑨·⑩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외국기업의 신규상장 심사
요건) ① -----

아니하고, 제6조제1항제6호나목
또는 다목의 요건은 적격해외증
권시장(홍콩증권거래소 및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는 제외한다) 이 소재
하는 국가에 설립된 외국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다만, 최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외국지주회사는 외국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에 설립 또는 전환시의 지주회사 지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 이익규모,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 경영성과 및 이익규모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4) 또는 (5)의 요건은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의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외국지주회사의 경우 이익규모는 외국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이익에 설립 또는 전환시의 지주회사 지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고, 매출액은 외국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연결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 및 자본총계(소수주주지분은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최근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최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외국지주회사는 나목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당기순이익과 설립 또는 전환시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최근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기준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최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외국지주회사는 외국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 설>

자기자본은 설립 또는 전환시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면서 기준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3)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신 설>

<신 설>

라. (생 략)

2. (생 략)

④ (생 략)

면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였을
것

(4) 기준시가총액이 500억원 이
상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매
출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지주회사 및
외국자회사가 적격해외증권
시장(홍콩증권거래소 및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는 제외한다)이
소재하는 국가에 설립된 경
우에 한한다.

(5) 기준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으로 공모(매출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 자기자
본 대비 기준시가총액 비율
이 100분의20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지주회사 및 외국자
회사가 적격해외증권시장(홍
콩증권거래소 및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는 제외한다) 이 소재
하는 국가에 설립된 경우에
한한다.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외국기업의 본국법상 자본금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가목 및 제6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생략)

제19조(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합병) 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생략)

2. 주권비상장법인이 합병의 주요 사항보고서(법 제161조에 따라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계·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보다 더 크거나 세척에서 정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등이 있는 합병인 우회상장의 경우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527조의2에

⑤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외국기업
의 경우에는-----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합병) ① -----

-----.

1. (현행과 같음)

[illegible]

따른 간이합병 또는 제527조의
3에 따른 소규모합병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6조제1항제2호가목(주권
비상장법인이 벤처기업인 경
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가
목), 제4호, 제5호, 제6호가목
또는 나목(주권비상장법인이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
제9호를 충족하고 있을 것
나. ~ 마.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의2(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교환) ① 코스닥시장 상장법
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상법」
제360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
교환”이라 한다)을 하여 주권비
상장법인을 완전자회사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생략)

2. 세칙에서 정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등이
있는 주식교환인 우회상장의
경우,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은

-----.

가.-----

-----제6호가목(1) 또는
는 (2)[주권비상장법인이 벤
처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제1
항제2호가목(1) 또는 (2)]---

나. ~ 마.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교환) ① -----

-----.

1. (현행과 같음)

2. -----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제6조제1항제2호가목(주권 비상장법인이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가목), 제4호, 제5호, 제6호가목 또는 나목(주권비상장법인이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 제9호를 충족하고 있을 것

나. ~ 마.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의3(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양수 등) 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으로부터 법 제165조의4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생략)

2. 영업(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만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3에서 같다)양수의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 또는 이후 6월 이내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최대출자자등

-----.

가.-----

제6호가목(1) 또는 (2)[주권 비상장법인이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가목 (1) 또는 (2)] -----

나. ~ 마.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양수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최대출자자 및 법시행령 제8조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및 5%이상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3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등을 발행하거나 세척에서 정하는 주식이전(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3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세척에서 정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등이 있는 영업양수인 우회상장의 경우 당해 양수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세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양도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말하고, 주권비상장법인이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가. 제6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나. ~ 마. (생략)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가.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나. ~ 마.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illegible]

하고, 주권비상장법인이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가. 제6조제1항제2호가목(주권비상장법인이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가목), 제4호, 제5호 및 제6호가목 또는 나목(주권비상장법인이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 및 제9호를 충족하고 있을 것

나. ~ 라. (생략)

③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당해 주식 발행에 대한 납입이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인 경우로서 당해 지분증권의 현물출자 금액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마목(1)의 규정에 따른 신고 이전인 경우에는 최근

-----.

가. -----

-----제6호가목 (1)
또는 (2)[주권비상장법인이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가목 (1) 또는 (2)] -----

나. ~ 라. (현행과 같음)

③ -----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을 말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3에서 같다]의 이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세척에서 정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변경등이 있는 현물출자인 우회상장의 경우 당해 주권비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현물출자의 결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당해 주권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한하고, 주권비상장법인이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1. 제6조제1항제2호가목(주권비상장법인이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가목), 제4호, 제5호, 제6호가목 또는 나목(주권비상장법인이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 및 제9호를 충족하고 있을 것

2. ~ 4. (생략)

제19조의4(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
병상장) ① (생략)

1. 주권비상장법인등이 일반기업, 벤처기업 또는 기술성장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각각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주권비상장법인등이 신속합병상장기업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9호가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6조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자본은 10억원으로 하고, 주권비상장법인등이 규정 제18조의4제1항의 우회상장심사서류 제출 전 1년 이내에 인수합병중개망에 등록된 후 1월을 경과하고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및 이익등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19호가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신속합병상장기업 또는 인수합병중개망에

제19조의4(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
병상장) ① (현행과 같음)

[illegible]

등록된 법인의 현저한 영업 악
화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
19호가목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일반기업 : 제6조제1항제1
호, 제2호가목, 제4호, 제5호,
제6호가목 또는 나목, 제9호,
제14호 및 제19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다만, 유
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제6조제1항제19호의 요
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나. 벤처기업 : 제6조제1항제4
호, 제5호, 제9호, 제14호, 제
19호, 제7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충족하고 있을 것. 다만, 유
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제6조제1항제19호의 요
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
다.

다. (생략)

2. ~ 4. (생략)

③ ~ ⑥ (생략)

제21조(상장 후 매각제한) ① 계속
보유 의무자의 주식등의 계속보유

가. -----
-----제6호가
목[(3)의 요건은 제외한다] -

-.

나.-----
-- 제9호 -----
----- 제2호
가목[(3)의 요건은 제외한다]
--- -----

--.

다.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상장 후 매각제한) ① ----

가. (생략)

나. 대형법인

다. (생략)

② ~ ⑧ (생략)

제26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① ~

⑤ (생략)

⑥ 상장주선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상장예정법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해당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득수량의 산정기준 및 취득방법 등에 대하여는 세칙에서 정한다.

1.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7조제1항에서 같다) 상장주선의 경우에는 해당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6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가. (현행과 같음)

나. 대형법인(외국기업은 제외한다)

다.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상장주선인의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 1년
----- . 다만,
상장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월마다 최초보유주식의

2. (생략)
<신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형법인
 또는 적격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외국기업에
 대하여는 제6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 ⑨ (생략)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업의 상장을 주선한 상
장주선인은 공모로 주권을 취득
한 일반투자자에게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주권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투자자 보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제2조제31항제2호에 따른 기술
성장기업. 이 경우 해당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세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에
게 공개하여야 한다.

2. 제6조제1항제6호나목 · 다목,
제7조제1항제2호나목 · 다목 또
는 제7조의2제3항제1호다목(4) ·
(5) 요건을 갖추어 상장한 기업

⑧ ----- 대형법인(외
국기업은 제외한다) -----

 ----- 않을 수 있다.

⑨ · ⑩ (현행 제8항부터 제9항까
 지와 같음)

제27조(소속부 지정 및 변경)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외국기업, 기업인수목적회사, 제28조의 관리종목 및 제28조의2의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업규모, 재무상태, 경영성과, 기업경영의 건전성, 업종 등 기업특성 및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부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기술성장기업부 : 제2조제31항에 의한 기술성장기업, 신속이전기업 또는 신속합병상장기업

② ~ ④ (생략)

제28조(관리종목)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에 대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2호부터 제3호의2까지, 제12호 및 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소속부 지정 및 변경)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 : 기술성장기업, 신속이전기업, 신속합병상장기업 또는 제6조제1항제6호나목·다목이나 제7조제1항제2호나목·다목 요건을 갖추어 상장한 기업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관리종목) ① -----

-----.

1. (생 략)

2.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기술성장기업(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하 제3호, 제3호의2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로 한다)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기술력과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를 연장할 수 있다)에 대해서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3.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
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

1. (현행과 같음)

2. -----

-----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의 경우에는 신규상장일 또는 제
19조의4에 따른 합병상장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
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로 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를 포함한 연속
하는 5개 사업연도에 대해서 본
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기술성장기업(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3호 및 제3호의2에서 같다)

나. 제6조제1항제6호나목·다목,
제7조제1항제2호나목·다목 또는
제7조의2제3항제1호다목(4)·(5) 요건을 갖추어 상장한
기업

3. _____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다만, 기술성장기업은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로 한다)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호에서 정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

가. 기술성장기업 : 신규상장일 또는 제19조의4에 따른 합병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나. 제6조제1항제6호나목·다목, 제7조제1항제2호나목·다목 또는 제7조의2제3항제1호다목(4)·(5) 요건을 갖추어 상장한 기업 :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

3의2 ~ 16. (생략)

② ~ ⑩ (생략)

제38조(상장의 폐지) ① (생략)

②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기업심
사위원회(이하 “기업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를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
지한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위원회의 심의·의
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의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상장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
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내용
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계
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의2 ~ 16.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38조(상장의 폐지) ① (현행과 같
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상장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와 관련한 제출서류 ---

5. -----

경우 가. ~ 차. (생략) <u><신설></u> 카. (생략) ③ 제2항제5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구체적인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④ ~ ⑧ (생략) 제41조(외국기업의 상장폐지 등) ① ~ ⑤ (생략) ⑥ <u>외국기업의 본국법상 자본금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제4호가목 및 제38조제1항 제10호나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⑦ (생략)	---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u>제6조제1항제6호나목·다목, 제7조제1항제2호나목·다목 또는 제7조의2제3항제1호다목(4)·(5)의 요건을 갖추어 상장한 기업이 제28조제1항제2호단서 또는 제3호 단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 중 세칙으로 정하는 규모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u> 타. (현행 카목과 같음) ③ ----- ----- 카목 -----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1조(외국기업의 상장폐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무액면주식을 발행한 외국기업의 경우에는-----</u> ----- -----. ⑦ (현행과 같음)
---	---